
CP0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책 간담회 자료

'17. 4. 3.



방송통신위원회

[목 차]

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	1
② 위치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	3
③ 「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」 주요 내용	5
④ 「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」 주요 내용	7
⑤ 「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」 주요 내용	9
⑥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	11

□ 추진 배경 및 경과

- 기술발전과 시장변화를 반영하고,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·개선

※ 입법예고('16. 9. 23.~'16. 11. 4.), 위원회 의결('16. 12. 6.), 국회 제출('17. 3. 8.)

□ 주요 내용

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(안 제22조 제2항, 제24조의2제1항)

- (현행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*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

*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경제적·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가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,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- (개정) ①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②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·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

※ 다만, ①은 제3자 제공의 사전동의 예외에서 제외

② 서비스 개선은 동일한 수집·이용 목적으로 규정(안 제22조제3항)

- (현행) 수집·이용 목적의 변경 시에도 추가적인 동의 필요
- (개정) '기존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능을 추가하는 서비스 개선'은 수집·이용 목적의 변경으로 보지 않음

③ 개인정보 처리위탁 절차 개선(안 제25조)

- (현행)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'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'에만 예외적으로 동의를 면제
- (개정) '수탁자'와 '처리위탁 내용'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고지하면 동의 없이 처리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

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신설(안 제30조의2)

- (현행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만 규정
- (개정) 동의철회권에 추가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'처리정지 요구권' 신설

⑤ 국외이전 사전동의 예외 사유 추가(안 제63조제2항)

- (현행) 국외 이전 사전동의 예외(처리위탁·보관에 한정)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규정
- (개정) ①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, ② 계약의 체결·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전항목 등을 고지·공개한 경우, ③ 국외이전받는 자가 방통위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를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

⑥ 국외 재이전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(안 제63조제8항)

- (현행) 관련 규정 없음
- (개정)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재이전하는 경우도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

⑦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및 벌칙 규정 신설(안 제63조제5항 및 제73조)

- (현행) 관련 규정 없음
- (개정) 위법하게 국외이전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통위가 국외(재)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□ 추진 배경 및 경과

- 위치정보법에 기술발전과 시장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, 관련 법체계 및 EU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여 위치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

※ 입법예고('16. 9. 23.~'16. 11. 2.), 위원회 의결('16. 12. 6.), 법제처 심사('16.12.~)

□ 주요 내용

①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

- (현행) 위치정보사업자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함
- (개정) 사물위치정보*를 수집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규제 완화

* 위치정보 개념에서 개인위치정보(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포함)를 제외한 개념이며, 드론의 위치정보 등이 주요 사례임

②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절차 간소화

- (현행) 관련 규정 없음
- (개정) 1인 창조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호·소재지 등 일정 사항만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 신고절차를 간소화

③ 사물위치정보 동의제도 합리화

- (현행)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
- (개정) 사물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

④ 개인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

- (현행) 개인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*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

* ①‘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’, ②‘통계작성, 학술연구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’로 한정

- (개정) ① ‘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’, ② ‘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’를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하고,
 - ‘기존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능을 추가하는 서비스 개선’은 수집·이용시 동의받은 목적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

⑤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신설

- (현행) 관련 규정 없음
- (개정) ‘수탁자’와 ‘처리위탁 내용’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면 처리위탁 가능
 -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및 교육의무, 재위탁 근거 등 신설

⑥ 국외이전 법적 근거 마련

- (현행) 관련 규정 없음
- (개정)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통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외이전 받는 자의 보호조치 의무 규정
 - ※ ①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, ②계약의 체결·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전항목 등을 고지·공개한 경우, ③국외이전 받는 자가 방통위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예외
 - 또한, 위법하게 국외이전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통위가 국외(재)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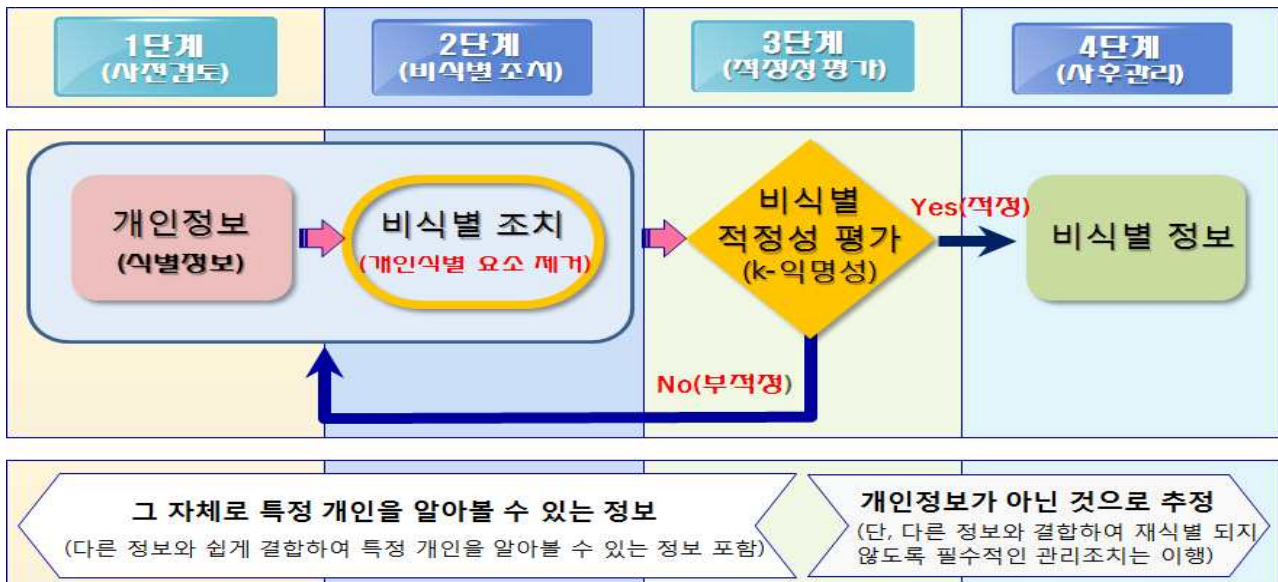
3

「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」 주요 내용

□ 배 경

- 비식별 조치의 수준·절차·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·시행('16.7월)

<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>



□ 비식별 조치의 단계별 설명

① 사전 검토 단계 : 개인정보 해당여부 검토

-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,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 가능

② 비식별 조치 단계 : 비식별 조치기법 적용

- 기업에서 비식별 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 식별요소를 비식별 조치할 수 있는 기법과 그 적용 방법 등 안내
- 가명처리, 총계처리, 데이터 삭제, 데이터 범주화, 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가지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

③ 적정성 평가 단계 : k-익명성 모델 활용

- 비식별화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*」을 통해 엄격히 평가

* 평가단은 법률·비식별 조치 관련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

- 적정성 평가 시 재식별 가능성 검토 기법인 k-익명성* 등을 활용

* 특정인에 대한 추론 여부를 검토, 그 가능성을 일정수준($1/k$ 값) 이하로 낮추도록 함

-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다고 평가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,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

※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시 누군가에 의해서 당해 정보주체가 식별될 우려

④ 사후관리 : 재식별 방지 조치

- 비식별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추진

- 이용 목적을 달성한 비식별 정보의 파기조치, 비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 등 관리 등

-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, 재식별된 경우 정보처리 중단 및 파기조치

□ 비식별 조치 지원 및 관리체계 안내

- 분야별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(정보통신·공공)을 통해 비식별 지원 체계 마련

- 산업별로 필수적 비식별 조치 이행 권고,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지원, 중소기업·스타트업 등에 대한 컨설팅·교육 지원 등

※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식별조치 지원현황 : 통신·공공 분야 합계 78건('16.8월~'17.2월)

- 빅데이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동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DB결합 지원

□ 향후일정

- 비식별 조치 지원 : '17년(연중)

-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: '17.3월~

□ 배 경

- 온라인 사이트 방문·이용 이력 등이 이용자 모르게 수집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사이트에 노출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
- 이에,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원칙과 조치방법을 제시

□ 주요내용

① 적용 대상

- (광고 사업자)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,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
- (매체 사업자) 자사 웹사이트 및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행태정보의 수집을 허용하거나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전송되도록 하는 사업자

② 행태정보 수집·이용의 투명성 원칙

- (행태정보의 수집·이용) 자사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직접 전송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광고가 제공되는 화면 등에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관한 아래 사항을 상세히 안내

< 안내 사항 >

①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	② 행태정보 수집 방법
③ 행태정보 수집 목적	④ 행태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
⑤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	⑥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

- 타사 매체를 통해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 내부나 주변부에 '안내 표지(①, ㉠ 등)'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함

< 안내방법 예시 >



① 온라인 맞춤형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별도 안내표지 마련



② 표지 클릭 시 안내 페이지로 연결

①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자의 사업자	OOO 광고 컴퍼니 (OOO 법)
② 수집하는 온라인 행태정보의 항목	-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이력 - 이용자의 앱 사용 이력 - 이용자의 검색 이력
③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방법	- 이용자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전송 - 이용자 앱 실행 시 자동 수집전송
④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목적	사용자 관심 기반의 맞춤형 광고 제공
⑤ 온라인 행태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	- 웹사이트 방문 정보 00일 - 앱 사용 정보 00일 - 애플리케이션 이용 정보 00일
⑥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	1. 이용자 맞춤형 광고 설정 2. 기타 방법 - 웹 브라우저 : 인터넷익스플로러, 파이어폭스, 사파리 - 스마트폰 : 아이폰, 안드로이드폰 - 관련 전화 : 000-0000  가이드
⑦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	상담처 : 02-123-4567, E-MAIL : 000@000.co.kr

③ 안내 페이지에 안내 사항을 포함한 설명 게시

- 매체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행태정보를 수집·처리하는 광고 사업자명과 그 수집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

- (최소 정보 수집) 광고 사업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민감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
- (개인 식별정보와의 결합)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획득해야 함

③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원칙

-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통제수단을 안내·제공해야 함

< 이용자 통제권 보장 방법 >

- 광고 화면 또는 관련 링크 등을 통해 광고 수신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 (위 < 안내방법 예시 > 참고)
-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쿠키 및 인터넷 이용기록을 삭제·차단하는 방법
- 광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협회 등의 단체 웹페이지에서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하는 방법

④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 원칙

-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, 필요 최소한의 기간만큼만 보관하여야 함

⑤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화 원칙

- 맞춤형 광고 및 행태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,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운영

□ 향후계획

-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홍보 등을 거쳐 '17.7월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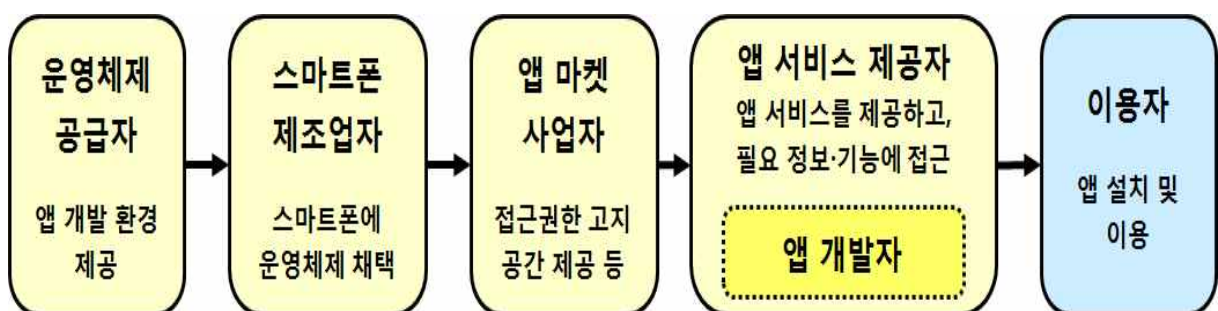
□ 배 경

- 무분별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,
 - 개정된 정보통신망법(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)은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
- ※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, 동법 제76조제1항 제1호제1호의2·제12호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이에, 앱 서비스 제공자 등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마련·시행

□ 주요내용

① 적용 대상 및 기기

- (적용 대상) 운영체제공급자, 스마트폰제조업자, 앱 마켓 및 앱 서비스 제공자 등 스마트폰 앱 관련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자



- (적용 기기)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이 가능한 태블릿PC

※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, 와이파이,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

② 사업자 유형별 준수 사항

- 앱 서비스 제공자 : 앱을 설치 또는 실행 과정에서, ① 필수적·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, ②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, ③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
 - ④ 이용자가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
- ※ 운영체제 공급자, 스마트폰 제조업자, 앱 마켓 사업자도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갖게 됨
- 운영체제 공급자 : 접근권한별 동의 기능 및 동의철회 기능을 제공하고,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개발자가 알기 쉽도록 공개
- 스마트폰 제조업자 : 스마트폰에 동의·철회 방법이 적정하게 구현된 운영체제를 설치
- 앱 개발자 : 스마트폰과 운영체제의 환경에 맞게 앱 제작·공급 시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을 구현
 -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향후 제공 예정인 서비스를 위해 미리 접근권한을 설정해서는 안 됨
- 앱 마켓 사업자 : 접근권한 고지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,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설정·운영하지 않도록 자체 검수 절차를 운영
 - 또한 본 안내서 내용을 앱 등록 화면 등을 통해 홍보

③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 방법 안내

- 이용자가 접근권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, 동의 여부 선택 및 사후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통제 방법 안내

□ 향후계획

- 앱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근권한 관련 기능 수정·보완 등 변경 일정을 고려하여 '17.6월까지 계도기간 운영

※ '17.7월부터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예정

-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홍보 : '17. 4월 ~ 6월

6

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

가

APEC CBPR 도입 추진

□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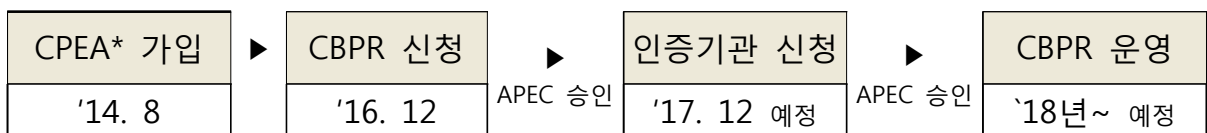
- ICT 기술발전에 따른 글로벌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활발해짐에 따라 APEC CBPR* 가입을 통해 국외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국가 간 협력 강화

* APEC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의 이전을 위해 '11년에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

-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, CBPR 도입이 각국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
□ 주요 경과

- '16.6월 「APEC CBPR 가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」 구성
 - ※ 방통위·행자부(공동주관), 외교부, 산자부, 금융위, 개보위 등 참여
- 한국은 '16.12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APEC 승인 대기 중



* CPEA(국경간 프라이버시 집행협정) : APEC 역내 프라이버시 집행기관이 가입하여 집행협력 수행

※ 미국('12.7월), 멕시코('13.1월), 일본('14.4월), 캐나다('15.3월) 등 4개국이 가입, 인증기관은 미국(TRUSTe, '13년), 일본(JIPDEC, '16.1월) 2개 기관 승인('17.2월 기준)

- TRUSTe는 '13년부터 Apple, IBM 등 18개 기업을 인증했으며, JIPDEC은 '16년 인증 업무 시작 이후 '16.12월 1개 기업(Intasect) 인증

□ 주요 내용

- (CBPR 법적근거 도입)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CBPR 인증기업에 대하여 국외이전에 대한 별도동의 절차 면제 근거 마련

정보통신망법 개정안(국회제출안) 제63조(개인정보의 국외이전)

-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국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·처리위탁·보관하려면 제24조의2제1항에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**동의를 받아야 한다.**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**동의를 받지 아니하고** 개인정보를 **국외이전할 수 있다.**
- 3.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**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**을 받은 경우

- (CBPR 세부기준 마련) 표준형 또는 한국형 CBPR 등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도입 방안 분석 및 그에 따른 CBPR 세부 심사기준 마련
 -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검토 및 PIMS 인증기준과 연계방안 모색
- (국내 인증기관 지정) CBPR의 성공적 도입·정착을 위하여 국내 인증기관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APEC에 승인요청 서류 제출
 - TRUSTe(미국), JIPDEC(일본) 등 국제 CBPR 인증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증기관 별 인증 형평성 유지 및 분쟁해결 공조
- (CBPR 홍보·교육) 해외기업 국내지사 및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CBPR 홍보·교육 진행

□ 기대효과

-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대 및 개인정보 법집행 공조 강화
- 국내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해외 진출 유리
- APEC 등 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

□ 추진 일정(안)

- CBPR 심사기준(안) 및 인증절차 등 세부 체계 마련 : ~9월
- CBPR 인증기관 신청 서류 준비 및 위원회 의결 : ~12월

나 EU 적정성 평가 추진

□ 배 경

- EU GDPR* 발효('18.5월)에 대비하여 적정성 평가**를 추진함으로써 유럽진출 국내기업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부담 완화

* 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 : 보호수준과 구속력이 기존 EU 지침보다 강화된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제로,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역외이전 금지

** EU가 요구하는 적정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, 승인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이전 할 수 있음

□ 경과 및 추진내용

- (주요경과) 한국은 '15.9월부터 EU 집행위(이하 EC)와 협상을 시작했으며, EC는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적극 검토 의지를 보임*

* '17.1월 EC 커미셔너가 한국·일본의 적정성평가(방법분야)를 올해 끝내기 희망한다고 밝힘

- 한편, 일본 정부(개보위·경제성)는 최근 브뤼셀을 방문하여 EC 커미셔너와 면담을 진행(3.20)하는 등 적정성 평가 협상을 적극 추진 중

※ '17.3.21 일본 아베 총리가 EC Juncker 집행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, 5~6월 EC-日 고위 관계자 회의, 7월 EC 커미셔너의 일본 방문 협의 예정

- (추진내용) 유럽평의회(CoE) 108호(개인정보보호협약) 총회 참석 및 한-EU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통해 적정성 평가 협상 추진

- 정보통신방법을 중심으로 보호수준 적정성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, GDPR과 정보통신방법을 비교·분석하여 법제 개선방안 검토

□ 추진 일정(안)

- 정보통신방법 중심 적정성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: ~5월
- CoE 108호 총회 참석 및 EC와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: 6월
- 한-EU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공동개최(브뤼셀) : 10월말(예정)
- EU 적정성 평가 승인 추진 : 계속